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52
----------	-----

2023년 3월 1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02월 02일 박철성 의원 (찬성 32명)
2. 회부일자 : 2023년 02월 09일
3. 상정일자 :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3년 02월 28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박철성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가함.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Ⅲ. 검토보고의 요지

1 개정조례안의 취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 및 내용

-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, 소득 하위 가구¹⁾의 경우 평균 이사횟수는 평균 4.5회로, 전국 평균 3.6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또한 5회 이상 이사를 경험한 비율도 23.2%로 전국 평균이 18.8%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.
 - 특히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이사횟수는 평균 5.5회이며, 이 가운데 5회 이상 이사를 경험한 비율도 36.6%로 나타남.
- 동 조사에 따르면, 소득하위가구는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7.3%로 전국 평균 11.1%에 비해 높게 나타남.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34.2%가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 이유는 자가마련보다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

1) 본 조사에서 소득하위가구란 가구 경상소득이 10분위 중 1분위~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함.

각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표> 이사경험 및 이사횟수

구분	이사 경험 및 이사횟수 (%)								평균 (회)
	이사한 적 있음							이사한적 없음	
	소계	1회	2회	3회	4회	5회 이상	모름/무 응답		
전국	75.3	16.3	15.2	16.2	8.7	18.8	0.1	24.7	3.6
소득하위 가구	63.6	14.7	9.2	10.4	6.1	23.2	0.1	36.4	4.5
기초생활 수급가구	78.0	12.2	10.6	11.0	7.4	36.6	0.3	22.0	5.5

<출처: 국토교통부,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>

- 이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, 저소득 주민의 경우 잦은 이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경제적,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
<표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생활안정지원의 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5조(생활안정지원의 내용) ① ---- ----- ----- -----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11.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</u>

현행	개정안
11. (생략) ② (생략)	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나. 서울시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

- 서울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경제적,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, 서울형 긴급복지, 서울안심소득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.
- 본 조례에 근거한 생활안정 지원의 대상²⁾은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, 서울형 기초보장제도, 서울형 긴급복지,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³⁾를 대상으로 생계급여(차등지원), 해산급여,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

2)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생활안정지원의 대상)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수급권자
2. 차상위계층
3.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4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, 서울형 긴급복지, 서울안심소득 대상자
5.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

3) 2022년 사업방침서 기준

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%이하

- 재산기준 : 가구당 1억 3천5백만원 이하 /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%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

업이며,

-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 주민센터·자치구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기타지원(교육비,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 등)을 지원하는 사업임.

다. 기타 서울시 유사사업 추진현황

(1)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
- 서울시에서는 미래청년기획단과 주택정책실에서 각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음.
-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, 청년기본법 제20조4)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5),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기본조례 제7조6)에 의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임.

-
- 4)청년기본법 제20조(청년 주거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5)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,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입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,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6)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7조(청년주거사업)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용자지원사업
 2.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
 3.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
 4.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
 5.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
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

<표>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

구분	내용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가구 (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) ·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·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규모	· 약 5,000명
지원내용	· 이사비 및 중개보수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(생애 1회)
소요예산	· 2,255백만원
지원방법	· 청년포털사이트 신청시 자격요건 검증 후 실지출 비용 계좌입금

- 2022년 해당 사업은 총 5,201명이 신청하였으며 3,286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.

(2)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

-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(반지하 포함)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지원, 보증금, 이주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.

<표>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개요

구분	내용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토부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, 만화방,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(반지하 포함)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가정폭력 피해자,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-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
구분	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~70%이하인 사람 - 총 자산가액 242백만원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인 사람
지원내용	· 40만원 상한에서 이사비, 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
소요예산	· 2,664백만원 (국비 및 시비)
지원방법	· 동주민센터로 신청 후,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지원

- 이처럼 이미 서울시에서도 주거조례 등을 근거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3 종합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저소득층 주민일 수록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잦은 주거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그러나, 이미 집행기관의 다양한 부처에서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,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금액의 설정, 중복수혜 배제방안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철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5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박철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태, 김지향,
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영한, 소영철, 송재혁,
아이수루, 유만희, 유정인,
, 유정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영실, 이용균, 이종태,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
최민규, 최재란, 한·신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32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
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저소득층의
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
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
지원을 추가함.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생활안정지원의 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생활안정지원의 내용) ① - ----- -----. ----- ----- 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</u></p> <p><u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21110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철성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선동규 분석관

접수일 : 2022.11.10.

회신일 : 2022.11.14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‘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’ 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(제3조제1항2호)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담당 부서 확인 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,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규모 그리고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

◆ (참고) ‘이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관련’ 2023년 신규 사업 ◆ 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세부내역	예산액
합 계		4,644,000
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	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	2,000,000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(국비매칭사업)	이주 지원(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)	2,644,000

※ 2023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예산(안) 참조

※ 지원대상 소득기준 :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(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~70% 이하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선동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